

시보는 글꼴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26호(호외) 2021. 7. 6.(화)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1-1329호 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1944, 행정1945)

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5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 개정('20.12.10.시행)에 근거하여 「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 광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 나.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 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삭제(안 제4조)
- 라.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개정(안 제5조)
- 마. 지역정보화협의회 설치·기능·위촉해제 삭제(안 제6조, 제7조, 제8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1. 7. 5. ~ 2021. 7. 26. (21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양시장(참조: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qkrwnstjd@korea.kr

- 주 소 : [57785] 광양시 시청로 33, 정보통신과(중동)

- 팩 스 : 061-797-2598

라. 문의처 : 광양시 정보통신과(전화: 061-797-2463)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광양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제3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지능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

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시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조정
2. 지능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의 제목 “지역정보화 추진” 을 “지능정보화 추진” 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을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화” 를 “지능정보화”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역정보화” 를 각각 “지능정보화”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역정보화” 를 “지능정보화”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정보화 추진” 을 “지능정보화 추진” 으로, “지역정보화” 를 “지능정보화” 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정보화 책임관” 을 “지능정보화책임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정보화” 를 “지능정보화” 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아니한 경우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을 “않은 경우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아니” 를 “안” 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아니한” 을 “않은”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광양시 지역정보화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 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3. ~ 5. (생략) <u><신설></u> 제3조(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u>정보화</u>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u>광양시 지능정보화 조례</u> 제1조(목적) ----- 지능정보화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5.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 <u>지능정보화</u> ----- ----- 1. ~ 4. (현행과 같음) 5. <u>지능정보화</u> ----- -----

현행	개정안
<u>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u> <u>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u>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광양시 지역정보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 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u>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u>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광양시 지역정보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광양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있어 전라남도 지역정보화 계획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u>제2장 지능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u> <u><삭 제></u> <u>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u>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현행	개정안
③ 시장은 광양시 지역정보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u>제6조(광양시 지역정보화협의회 설치·운영)</u> (생략)	<삭제>
<u>제7조(협의회의 기능)</u> (생략)	<삭제>
<u>제8조(위원의 위촉해제)</u> (생략)	<삭제>
<u>제9조(정보화 책임관)</u>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 책임관을 둔다. ② 정보화 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u>제9조(지능정보화책임관)</u>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④ 정보화 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 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u>지역정보화의 추진</u> 제10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u>정보화</u>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u>지역정보화</u>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u>지역정보화</u>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시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조정 2. 지능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 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u>지능정보화의 추진</u> 제10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 ----- ----- ----- <u>지능정보화</u> ----- ② ---- <u>지능정보화</u> ----- ----- ----- ----- ③ ---- <u>지능정보화</u> ----- -----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u>지역정보화</u>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 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u>지역정보화</u> 추진을 위하여 <u>지역정보화</u>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①·② (생략)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단말기를 설치할 때에는 <u>정보화책임관</u>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u>정보화책임관</u>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성능 등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u>지역정보화</u>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지역정보통합센터</u>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전산정보 관리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전산파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u>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u>」에 따른다. 제16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생략)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u>지능정보화</u> ----- ----- ----- ----- ② ----- <u>지능정보화</u> 추진 ----- <u>지능정보화</u> ----- ----- ----- 제12조(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지능정보화책임관</u> ----- ----- <u>지능정보화책임관</u> ----- ----- ----- ④ ----- ----- <u>지능정보화</u> ----- ----- 제13조(전산정보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없는 경우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 제16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